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법률의 원활한 시행 및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법령간 불일치 문제 등 개선·보완 하고자 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대의원 선출 시 농어업경영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4조제1항)

법 제28조의2제1항에 대의원 선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, 자조금단체가 대의원 선출 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계 및 통계자료 외에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 법령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

나.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(안 제7조제1항)

기존 위임 규정에 추가하여 법 제37조제1항제4호의2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통계자료”를 “통계자료 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법 제37조제2항제2호, 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대의원의 선출 등) ① 의무 자조금단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 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별 농수 산업자의 수·유형(법 제28조제 1항에 따라 작성된 최근의 통계 및 <u>통계자료</u> 를 기준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해당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 명 이상 200명 이하의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. ② ~ ⑩ (생략)	제4조(대의원의 선출 등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통계자료 또는 법 제28조의2</u> <u>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</u> - ----- ----- -----. ② ~ ⑩ (현행과 같음)
제7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 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1. (생략) 2. 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 <u>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</u> <u>수</u> ② (생략)	제7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법 제37조제2항제2호, 제3호 <u>및 제4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</u> <u>부과·징수</u> ② (현행과 같음)